

발표논문

## 미국중재법과 중재합의\*

김 연 호 \*\*

### 〈목 차〉

- I. 서설
- II. 연방중재법의 중요특징
- III. 연방중재법과 중재합의의 강제수단
- IV. 중재합의와 연방중재법의 해석
- V. 중재합의와 주중재법의 해석
- VI. 결어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중재학회의 중재학술발표 논문임

\*\* 변호사

## I. 서 설

미국 중재법은 연방중재법<sup>1)</sup>과 주 중재법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FAA)은 주 중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연방중재법에 규정된 내용에 한하여서만 우선적 적용이 되고, 주 중재법은 연방중재법의 우선적 적용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그 분쟁의 성격이 국제중재이거나 국내중재이거나 관계없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주 중재법은 50개 주 전체가 입법화하였으며 대부분 통일중재법(Uniform Arbitration Act. UAA)을 채택하고 있다. 통일중재법은 연방중재법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제중재라고 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 한편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은 최근에 UNCITRAL Model Law를 모범으로 하여 개정작업을 하였다<sup>2)</sup>.

중재합의의 경우에는 연방중재법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중재합의에 관련한 분쟁이 연방법원에 계류되어 있든 아니면 주 법원에 계류되어 있든 관계없이 연방중재법의 내용이 중재합의의 성립과 해석의 근거법률이 되도록 되어 있다.

---

1) 9 U.S.C. § §1-16, 201-208, 301-307(1925년 2월 12일 제정, 1954년, 1970년, 1988년 및 1990년 각 개정)

2)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텍사스 주가 대표적임

## II. 연방중재법의 중요특징

연방중재법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1925년에 제정되었는데 16조로 이루어졌다. 이 장의 근본목적은 중재합의에 대한 법원의 적대적 판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즉, 제2조는 중재합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될 만한 취소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취소불능이며 집행 가능하다고 선언하였으며<sup>3)</sup> 제4조는 제2조를 보강하기 위하여 연방법원으로 하여금 중재합의에 따라 당사자에게 중재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제3조는 연방법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쟁점일부에 대한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사건진행을 중지(Stay of the trial of action)하여야 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다.

사건진행 중지명령(Stay)은 당사자에게 중재신청명령(또는 중재진행명령, Order Compelling Arbitration)보다는 소극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중재신청명령의 대신에 발부할 수 있고 사건진행 중지명령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종국판결의 형태로 중재신청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sup>4)</sup>.

사건진행 중지명령(Stay) 또는 중재신청명령(Compel)에 대하여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없으나 반면에 당사자가 사건진행 중지명령 또

3) Arbitration agreements shall be valid, irrevocable, and enforceable, save upon such grounds as exist at law or in equity for the revocation of any contract"

4) *Filanto S.A. v. Chilewich Int'l Corp.* 789 F.Supp. 1229(S.D.N.Y. 1992)

는 중재신청명령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항소가 보장되어 있다.

연방중재법 제1장은 외국과의 또는 주간의 거래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따라서 주 내에서의 거래행위로 인한 중재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 내의 거래행위의 개념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연방중재법의 적용범위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방중재법 제2장은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장이다. 이 장은 뉴욕컨벤션(1958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협정을 채용한 장으로서 협정당사자 국가간의 중재합의 조항과 협정당사자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규정들이다. 그러나 제2장은 뉴욕컨벤션에 표현된 중재합의의 승인(recognize)뿐만 아니라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를 명령(direct)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위에 설명한 사건진행 중지명령(stay)과 함께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인을 지정(appoint)할 것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뉴욕컨벤션의 표현보다도 한층 더 진일보한 규정을 제정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연방중재법 제3장은 파나마컨벤션(Inter-Americ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f January 30, 1975) 협정을 채용한 장이다. 파나마컨벤션은 뉴욕컨벤션과 거의 비슷하나 법원으로 하여금 중재신청명령(compel)을 가능하도록 한 점, 중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appoint arbitrators), 법원으로 하여금 Inter-American Arbitration Commission(미주간 중재위원회)의 중재규

칙을 준수하도록 한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만일 뉴욕컨벤션과 파나마컨벤션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중재합의 당사자 양자가 파나마컨벤션 협정의 당사자이고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의 당사자가 아닌 한 뉴욕컨벤션이 우선 적용되게 되어 있다.

연방중재법의 제1장과,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 내용이 상호 충돌될 경우에는 제1장은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과 배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제1장은 제2장 및 제3장에 비해 부차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Ⅲ. 연방중재법과 중재합의의 강제수단

#### 1. 연방중재법 제1장의 수단과 절차

연방중재법 제1장은 미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주들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의 중재합의에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래행위로부터 발생한 분쟁의 중재합의에는 적용이 될 수 없다. 제1장의 내용에 따라 연방법원은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의거하여 소송사건 진행을 중지하거나(Stay) 중재절차 진행을 명령할 수 있다(Compel). 다만 연방법원의 이러한 권한행사의 경우 해당 연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에서의 중재절차 진행명령은 그 강제성이 확보되지만 관할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중재절차 진행명령은 실효성이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관할을 벗어난 지역에서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사자가 중재지를 관할 이외의 지역을 합의한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절차 진행명령을 발할 수 없다<sup>5)</sup>.

## 2. 컨벤션 상의 수단과 절차

연방중재법 제2장 및 제3장은 제1장보다 넓게 적용이 된다. 즉, 연방법원은 미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래행위로부터 발생한 분쟁의 중재합의의 경우에도 제2장 및 제3장을 적용하여야 하며, 미국 외의 지역을 중재지로 합의한 경우에도 합의된 중재지에서의 중재절차 진행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컨벤션을 가입함에 있어서 미국은 협정 준수조건을 삽입한 바 있다. 즉, 상업적 관련(Commercial Relationship)이 있는 분쟁의 경우에만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외국적 요소 다시 말하면 어느 한 당사자가 미국인이 아니거나 외국에서의 이행이 전제가 된 거래행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협정 준수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다음 4가지가 있다.

(1) 당사자간에 서면 중재합의가 존재할 것. (2) 중재합의가 협정당사자 국가에서의 중재를 포함할 것. (3) 중재합의가 상업적 관련이 있는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할 것. (4) 어느 한 당사자는 최소한 미국인이 아니거나 또는 상업적 관련성이 외국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일 것 등이다.

---

5) Snyder v. Smith, 736 F.2d 409(7th Cir. 1984), cert. denied, 469 U.S. 1037(1984) 547 F.Supp. at 176-77.

위 제 (1)항의 요소는 2가지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중재합의가 존재할 것, 둘째, 중재합의가 중재부탁 사항을 포함할 것이다. 이 2가지에 대한 처리는 제1장의 중재합의 처리방법과 다르지 않다. 즉, 중재합의의 해석을 pro-arbitration 정책 하에서 행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중재이므로 보다 더 이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6)</sup>.

제 (2)항의 요소는 중재합의가 협정당사자 국가에서의 중재를 포함한 경우에만 그 중재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는 중재합의의 호혜주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이 요소는 뉴욕컨벤션 규정 내용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지만 법원이 창조한 조건이다. 협정당사자 국가에서 발부된 중재판정이라면 중재판정 자체는 그대로 집행되리라고 본다.

제 (3)항의 요소는 상업적 관련이 있는 거래로 인한 중재합의의 경우에만 이를 존중하겠다는 내용인데 따라서 혼인관계, 상속관계, 단체 노동행위관계 등의 분쟁의 중재합의는 해당될 수 없다. 그러나 “상업적 관련”의 의미는 해석상 넓게 인정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sup>7)</sup>.

제 (4)항의 요소는 국내중재의 영역을 살리기 위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이 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내인간의 중재합의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재산관련 분쟁, 또는 외국에서의 이행이 전제된 분쟁, 또는 다른 국가와의 관련이 있는 분쟁이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조건

6) Mitsubishi Motors Corp. v. Soler Chrysler-Plymouth Inc., 473 U.S. 614(1985).

7) Societe General de Surveillance v. Raytheon European Management and Sys. Co., 643 F. 2d 863(1st Cir. 1981).

충족이 될 수 없다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석함으로써 국내중재의 범위를 유보하고 있다.

## IV. 중재합의와 연방중재법의 해석

### 1. 중재합의와 근거계약과의 분리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중재에 응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중재부탁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도 중재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만일 중재판정이 중재부탁의 범위를 초월하였을 경우에는 판정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연방중재법에서 중재합의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이다. 합의내용에 따라 중재합의의 존재 및 그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당사자 계약자치의 원칙이 가장 잘 보장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시될 요점은 중재합의와 중재합의를 포함한 근거계약과는 분리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근거계약의 체결과정상의 기망행위 여부는 중재인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이 중재합의 분리 또는 독립의 원칙을 세웠다<sup>8)</sup>. 그 후 근거계약의 목적달성의 불가능, 협박으로 인한 근거계약의 체결 등의 주장의 경우에도 중재합의 분리의 원칙을 채택하여 중재합의는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결하였다<sup>9)</sup>.

---

8) Prima Paint Corp. v. Flood & Conklin Mfg. Co. 388 U.S. 395(1967)



## 2. 중재합의의 해석

중재합의는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하며 거래관행상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만으로는 중재합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 중재합의가 공식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포함할 필요까지는 없다. 뉴욕컨벤션이나 파나마컨벤션도 중재합의로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명확하거나 애매 모호하더라도 중재합의로서 유효하다고 본다<sup>10)</sup>. 당사자가 중재를 상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설사 중재합의 조항 상에 다른 흠결사항(예: 중재기관의 부존재)이 있더라도 중재합의로서 유효하다. 연방법원은 당사자가 중재하겠다는 최소한의 의도만 암시되어 있다면 특히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sup>11)</sup>.

비록 흠결사항이 있는 중재합의이더라도 유효한 중재합의로서 인정 받은 예를 들면,

(1) “Any disagreement arising out of this contract may only be presented to an arbitrary commission applying French laws”(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불일치도 프랑스법을 적용하는 중재위원회에 오직 제출될 수 있다)<sup>12)</sup>

9) Union Mutual Stock Life Ins. Co. v. Beneficial Life Ins. Co., 774 F.2d 524(1st Cir. 1985).

10) Republic of Nicaragua v. Standard Fruit Co. 937 F.2d 469(9th Cir. 1990).

11) Bauhinia Corp. v. China Nat'l Mach. & Equip. Import and Export Corp., 819 F.2d 247(9th Cir. 1987).

12) Jain v. de Mere, 51 F.3d 686(7th Cir. 1995).

(2) "Any and all disputes arising under the arrangements contemplated hereunder...will be referred to mutually agreed mechanisms or procedur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uch as the rules of the London Arbitration Association"(여기에서 상정된 거래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런던중재협회의 규칙처럼 상호 합의되는 국제중재의 매커니즘 또는 절차에 회부될 것이다)<sup>13)</sup>

(3) "All disputes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the execution thereof shall be settled friendly through negotiation. In case no settlement can be reached, the case may be then submitted for arbitration to the Arbitration Commission in a third country agreed and accepted by both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l rules of procedure. The arbitral award is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Arbitration fees shall be borne by both parties"(이 계약 또는 이행과 관계된 모든 분쟁은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해결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은 중재절차규칙에 따라 양 당사자에 의해 합의되고 수용되는 제3의 국가의 중재위원회 중재에 부쳐질 수 있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비용은 양 당사자에 의해 부담되어야 한다)<sup>14)</sup>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중재합의는 일반 계약법의 해석에 의할 경우 불분명하고 애매 모호하다는 이유로 무효이거나 강제성이 없는 조항

---

13) Republic of Nicaragua v. Standard Fruit Co., 937 F.2d 469(9th Cir. 1990).

14) Actual of America Inc. v. Tai Wing Enters., Ltd., 1996 WL 243562(E.D. Pa.).

으로서 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법원은 이를 유효한 중재합의로 인정한 바 있다.

### 3. 중재부탁 범위의 해석

중재합의의 존재 및 유효성에 관한 판단뿐 아니라 연방법원은 중재합의의 성립 이후 중재부탁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만 중재절차 진행명령(또는 중재합의 강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중재부탁의 범위에 관하여 연방중재법은 중재부탁에 속하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넓게(broad)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부탁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범위를 한정적으로 명백히 중재합의 상에 명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연방법원은 Moses Cone Presumption(모세tm 콘 추정원리)를 만들었는데<sup>15)</sup> 이는 중재부탁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무조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국제중재의 경우 더 강력히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원리가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시공사가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관하여 연방정부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일부를 하도급업체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시공사와 하도급업자간의 계약서에는 추가공사의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추가공사이후 시공사가 추가공사

15) Moses H. Cone Memorial Hospital v. Mercury Construction Corp., 460 U.S. 1(1983).

대금의 지급을 불이행하자 하도급업자는 중재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하도급계약서의 중재조항은, “Any dispute or any controversy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not involving the government or the terms of the prime contract should be submitted to arbitration”(정부 또는 원 공사계약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시공사와 하도급업자와의 모든 분쟁은 중재로써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공사는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다음 이 중재조항에 대하여 중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시공사의 중재부탁 범위 일탈주장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추가공사를 요구한 당사자는 정부이므로 하도급업자의 시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청구는 정부의 공사요구 및 원공사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중재조항 중 배제된 사항에 관한 중재이므로 중재판정을 취소한다고 하였으나<sup>16)</sup>, 항소심 법원은 위 모세스 콘 추정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중재조항의 문언적 해석과 중재라는 두가지 가치선택 중에 무게 중심은 당연히 후자 즉 하도급업자의 해석에 비중이 놓여져야 하며 분쟁당사자가 명백히 중재부탁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의도하지 않은 이상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재합의 중 중재부탁의 범위 중 특정 사항을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애매 모호할 경

---

16) *Finegold v. Setty & Association Ltd.*, 81 F.3d 206(D.C. Cir. 1996).

우에는 중재합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중재합의란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연방중재법이 규정하므로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하면서 중재부탁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그 문면상 명백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 모세스 콘 추정의 원리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positive assurance test(긍정적 보증의 테스트)이다. 이는 중재조항이 해당 분쟁을 포함한다는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보증되지 않는 한 중재진행이 명령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sup>17)</sup>. 이 긍정적 보증의 테스트 이론은 모세의 뿔 추정의 원리와 유사하지만 후자가 상사분쟁 중재조항의 해석에 인용되는 것과는 달리 주로 고용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중재조항에 인용됨에 차이가 있다.

#### 4. 중재합의의 존부 판단과 사법적 심사

연방중재법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중재합의 존부 판단을 전제로 소송진행의 중지(Stay) 또는 중재절차의 진행(Compel)을 명령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은 중재합의의 존부 및 중재부탁 범위가 확정을 하여야만 즉 중재합의를 심사하여야만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중재합의의 존부 및 범위 판단문제는 법원에게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도 중재권한의 전제가 되는 중재합의의 존부 및

17) United Steelworkers v. Warrior & Gulf Navigation Co., 363 U.S. 574(1960).

범위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음이 통설이다.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중재판정 중지신청을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수는 없다. 즉,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부 및 중재부탁의 범위에 관한 독립적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중재판정부의 중재합의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은 당사자가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형태로 법원에 제소를 하는 경우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즉, 중재판정부가 독자적으로 중재합의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되, 중재판정 취소의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구애되지 않고 중재합의의 존부 및 중재부탁의 범위에 관한 판단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내용 중에 중재합의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원의 판단권을 배제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 합의가 유효한지 또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하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한 중재판정 취소사건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존부 판단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법원의 최종 판단권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명백하고 실수없을 정도의(clear and unmistakable) 증거가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sup>18)</sup>.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Clear-and-unmistakable test”는 결국 관할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최종결정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론인데 이에 의하면 당사자가 명백하고 실수 없을 정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법원의 심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18) First Options of Chicago v. Kaplan 115 S. Ct. 1920(1995).

당사자가 명백하고 실수없을 정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예문으로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Provided further that the parties, desiring that maximum finality be accorded to the tribunal’s award, hereby agree that the tribunal shall have the power to determine conclusively all issues related to its own jurisdic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concerning: the existence of the agreement to arbitrate, the scope of the subject matter submitted, the parties who are to be bound by the agreement to arbitrate, the eligibility of all claims submitted, and the remedies available to the tribunal”(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최종적임을 원하면서 중재판정부가 중재합의의 존재, 중재부탁의 범위, 청구원인의 합법성, 구제수단 등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부 자신의 관할권을 포함한 모든 쟁점을 결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 합의한다)

한편, 위와 같은 긴 예문을 사용함이 없이 단지 중재조항 중에 “any and all controversies”를 중재로써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자는 중재합의의 존부 및 중재부탁 범위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게 그 최종적 판단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될 수 있다. 만일 연방대법원의 위 해석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의 최종판단권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것이므로 “any and all controversies” 문구만으로써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제2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긍정하고 있다<sup>19)</sup>.

19) PaineWebber, Inc. v. Bybyk, 81 F.3d 1193(2d Cir. 1996).

위와 같은 예문을 통하지 않고 중재판정부에게 중재합의의 존부 및 중재부탁 범위의 최종적 판단권한을 유보하는 방법으로는 관할판단권을 중재판정부에게 절대적으로 귀속시키는 중재규칙을 중재합의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즉, ICC 중재규칙 제8.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Should one of parties raise one or more pleas concerning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the agreement to arbitrate, and should the Court of Arbitration be satisfied of the prima facie existence of such an agreement, the Court of Arbitration may, without prejudice to the admissibility on the merits of the plea or pleas, decide that the arbitration shall proceed. In such case, any decision as to the arbitrator’s jurisdiction shall be taken by the arbitrator itself”(만일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중재법원이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일응 인정하였다면 중재법원은 그러한 이의내용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중재관할권에 관한 어떤 결정도 중재인 자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재합의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권이 전속적으로 중재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중재조항 상에 ICC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위 제8.3조에 의거하여 법원의 판단권을 배제할 수가 있는 것이다.



## V. 중재합의와 주 중재법의 해석

연방중재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연방법원에서만 적용되는 법이었으나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에서도 연방중재법을 적용하여야 함을 판결한 바 있다<sup>20)</sup>. 따라서 중재합의에 관한 연방중재법 제2조는 주 법원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주 중재법에서 중재합의에 관한 제한규정, 예를 들면 특별서명요구규정, 통지규정, 중재지에 관한 제한규정 등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방중재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게 된다.

중재합의의 해석에 있어서도 연방중재법의 취지와 판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pro-arbitration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재조항이 불명확하거나 애매 모호할 경우에도 계약법 해석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재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원리는 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채택한 통일중재법(UAA)의 내용 중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나, 알라배마 주처럼 중재에 거부적인 입법을 취한 주도 있다.

뉴욕컨벤션의 경우(연방중재법 제2장에 해당) 연방법원 뿐 아니라 주 법원도 기속하므로 연방중재법 제2장이 주 법원에도 적용이 된다. 따라서 뉴욕컨벤션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뉴욕컨벤션 가입당사자 국가간의 국제중재의 경우 주 법원에서의 중재판정의 이전단계

20) Volt Info. Sciences, Inc., v. Board of Trustees of Leland Stanford Junior Univ., 489 U.S. 468(1989).

에서의 가압류절차는 금지된다.

연방중재법이 주 법원에도 적용되어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중재조항이 포함된 근거계약의 준거법 조항을 주법으로 합의함으로써 연방중재법의 취지를 일탈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근거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준거법 조항에 캘리포니아 법을 적용한다고 했을 경우이다. 캘리포니아주 중재법에 의하면 “주 법원은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중지(Stay)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주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중재절차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바, 이렇게 되면 연방중재법이 허용하지 않은 중지명령절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된다. 또 다른 예로서는 주 중재법이 연방증권거래법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중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방중재법에 의하면 허용되는 중재가 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 VI. 결 어

결론적으로 미국연방법 및 주법은 다같이 중재합의의 해석에 관하여 넓게 인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중재합의 조항의 자구의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계약해석원리에 구속되지 않고 중재조항을 분리하여 유효성을 인정하고 중재부탁의 범위에 있어서도 확대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재법에 중재합의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경우 대법원의 유권해석까지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하급법원의 일반적 태도는 중재합의 조항의 경우에도 일반계약조항의 해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명확성을 요구하고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배제하겠다는 당사자의 분명한 의사가 드러날 만큼 명백하게 중재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중재합의는 되어 있으나 중재관할은 부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은 계약서 작성시 중재합의 조항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계약상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서 초안을 스스로 하였으면서도 중재합의의 불완전성을 트집잡아 중재합의내용과는 달리 소송으로 끌고 가서 분쟁해결의 지연을 의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중재법의 중재합의 해석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중재의 국제성을 감안하여 이를 참고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ABSTRACT

### Arbitration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Arbitration Agreement

Yeon-Ho Kim

The Federal Arbitration Act and the States Arbitration acts of the United States approve that the an arbitration clause should be construed broadly and the Courts interpreted it broadly without being curbed by the written meaning of clause itself. The Courts also divided the interpretation of arbitration clause from the interpretation of other clauses of contract to approve the validity of arbitration clause and further expanded the scope of arbitration.

However,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does not specify a general principle about how an arbitration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The Supreme Court did not have a case yet but the lower courts kept their posture that an arbitration clause should be clear by resulting narrow interpretation and should be written to the extent that it excludes the power of courts from jurisdiction.

As a result, there would be cases that arbitration is not permitted although an arbitration clause exists. The parties intending arbitration are frustrated about how to draft an arbitration clause

into their agreement. There were the cases that the parties which took the prevailing position attempted to delay dispute resolutions by dragging disputes into litigation even if they agreed to resolve through arbitration, on the basis that an arbitration clause was incomplete.

Although the arbitration statutes of the United States cannot apply in Korea, the way of their approaches to the interpretation of arbitration clause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view of the globalization of arbitration.

**Key Words :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tion Clause**

## 참고문헌

Jack J. Coe, J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ransnational  
Publishers, Inc.(1997)

American Jurisprudence, Second Edition, the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1993)

개정중재법해설, 개정중재법세미나자료(2000. 2. 15.)

홍성규, 국제상사중재, 도서출판사 두남(2002)